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의 주요내용 및 시행령 개정방향

김병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머리말

1980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86년 제1차 법개정은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하여 지주회사설립금지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90년의 제2차 법개정은 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조치의 수단을 확대하고,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였다.

92년 제3차 법개정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94년 제4차 법개정은 재벌기업의 소유분산과 채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분산우량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졌다.

이번 제5차 법개정은 92년 제3차 법개정시 도입된 채무보증제한제도의 경과기간이 96년 3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채무보증한도의 설

정이 필요하게 되고, 개방화·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를 경쟁촉진형 구조로 전환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자유화조치의 확대에 예상되는 경제력집중의 심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법개정의 주요내용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에서는 사업자의 자율과 창의성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면서, 경제자유화조치의 확대에 우려되는 독과점 형성과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발생을 억제하고, 아울러 21세기를 대비하는 선진적인 공정거래제도가 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1. 경제 각부분에 공정거래법 적용 확대

(1) 정부 각 부처가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쟁제한법령을 제·개정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법개정

에서는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전협의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경쟁제한적인 법령, 처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3조).

(2) 또한 금융·보험사업자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기업결합신고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보험사업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던 공정거래법 제61조를 삭제하고, 출자총액제한 등 예외인정이 계속되는 사항은 관련조항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였다.

2.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 제고

(1)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제3조).

(2)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채무보증한도를 축소하였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금융기관의 편중여신을 초래하고, 경쟁력이 없어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계열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해 존속함으로써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는 조속히 철폐되어야 할 관행이라는 인식하에 자기자본의 200%로 규

정하고 있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우선 1998년 3월 31일까지 100%로 축소하도록 하였다(제10조의2).

(3) 계열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종전에는 상품·용역부문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자산·자금·인력부문의 부당지원행위도 규제대상으로 추가하였다(제23조제1항).

3. 기업결합제한 제도의 정비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제까지 일정규모이상의 기업결합에만 적용하던 것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되, 신고대상 기업규모는 시행령에서 현행보다 대폭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제7조).

(2) 상장법인에 대한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주식소유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산하도록 하였다(제12조제1항).

(3) 또한 혼합결합이 독과점 시장구조의 형성과 경제력 집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2/3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에 진출하여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거나,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제7조제4항).

4.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강화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제22조의2).

(2) 종전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만 규제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로부터 핵심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웃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제23조).

(3) 또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제한행위를 하도록 유도·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제26조),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8조).

5.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등

(1) 과징금부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법인신설 등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액(5~10억원)의 범위안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6조등).

(2) 시정조치의 집행정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

우로서 시정조치의 이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제53조).

(3)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소비자피해구제를 강화하였다(제57조).

(4)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과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7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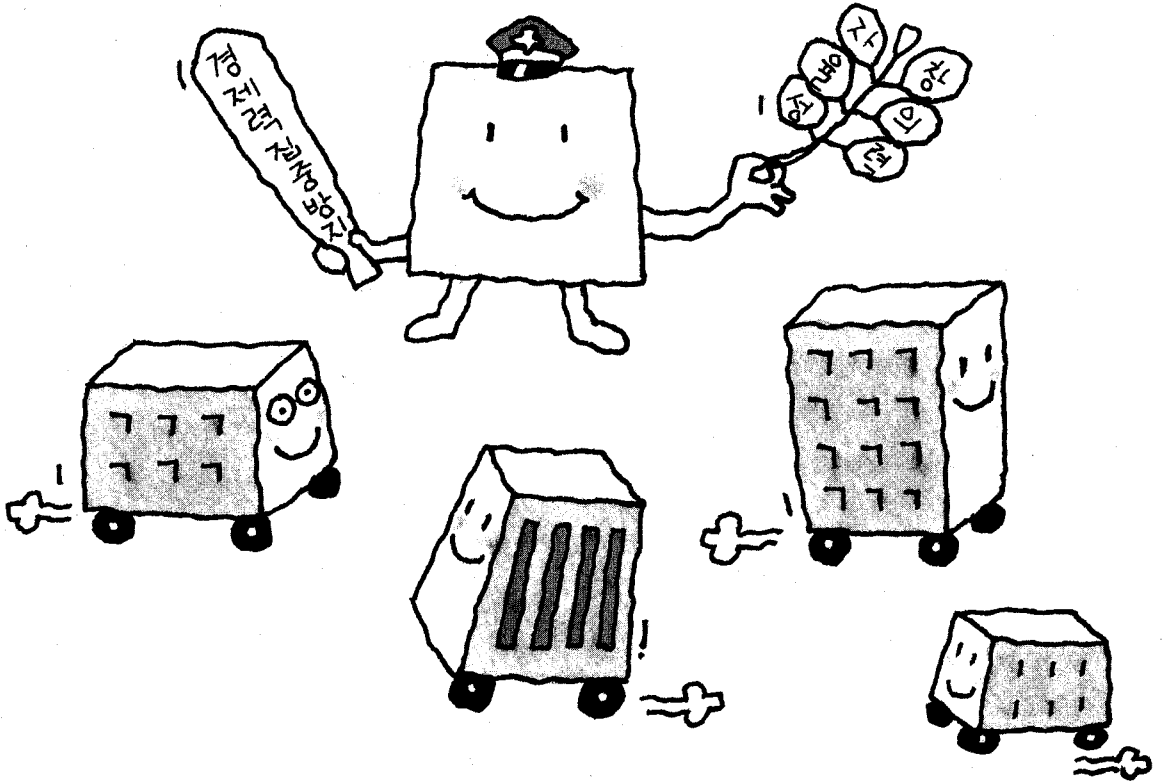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앞에서 설명한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 친족기업이 사실상 독립경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규정하되,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던 계열분리 인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친족간 자연스런 계열분리를 유도하였다(개정안 제3조제2항).

(2)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계열회사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계열회사 판정 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기타 임원의 임면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동일인측이 최대출자자로서 제2위와 지분격차가 큰 경우 또는 최대출자자는 아니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다(개정안 제3조제1항, 제3항).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품목의 금액기준을 상향조정(국내총공급액 연간 500억원이상 → 1,000억원이상)하고,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고 진입제한이 없는 등 독과점력의 남용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하였

다(개정안 제4조).

(4)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분산우량 회사의 지정기준을 현실성있게 보완하여,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요건은 강화(8%미만 → 5%미만)하되, 계열회사를 포함한 전체 지분요건은 완화(15%미만 → 20%미만)하였으며, 자본충실화 유도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요건을 상향조정(20% → 30%)하였다(개정안 제17조의 4).

(5)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의 신고대상 회사의 범위를 축소(총자산액 200억이상 →

1,000억원이상)하고(개정안 제18조),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대규모회사의 기준(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을 설정하였다(개정안 제11조의3).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협력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범위를 확대(당해 중소기업지분의 10%이내 → 20%이내)하였다(개정안 제17조의2).

2.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보완

(1) 경제력집중억제 관련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공익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통해 타회사 주식을 소유하여 사실상 지주회사로서 활동하거나 위장계열사를 통해 타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였다(개정안 제21조의3).

(2) 대규모기업집단의 자산·자금·인력분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회사에 자산·자금·인력을 무상 또는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여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개정안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제10호).

(3)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계열회사나 친인척이 아니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기업결합 특수관계인에 포함시켰다(개정안 제12조).

3.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시정을 위한 장치 보완

(1)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초로 신고한 경우이거나, 부당 공동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자진신고자에게 신문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개정안 제35조의2).

(2) 과징금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으로 하고, 과징금 채납시 연 6%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61조 내지 제67조).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맺는말

금번 제5차 법개정은 우리경제의 구석 구석에 산재한 경쟁제한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여 우리경제를 경쟁촉진형 구조로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아울러 최근의 자율화와 규제완화조치의 확대에 예상되는 경제력집중의 심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갖추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행령 개정에서도 금번 법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장의 경쟁원리가 우리경제의 기본적인 질서로 자리잡도록 적극 노력해 갈 계획이다. ■